

2. 학사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

제2장 학기등록

제2조(등록)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제3장 수강신청

제3조(신청요령) ① 학생은 매 학기 실시하는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한다. (2019.4.24. 개정) (2022.6.21. 개정)

②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별도 지정된 일자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신입생과 복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다.

③ 특히 3, 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 시 배부되는 수강신청편람을 세밀히 검토하여 교양필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의 이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은 한번 입력하면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⑤ “C+“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서에 재수강 표시를 하여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과목과 함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21학점까지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3.1. 수정) (2015.01.23. 자구 삭제)

②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3학점까지 초과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7학기 이상 수강하는 학생은 제1항과 관계없이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5.01.23. 자구수정)

④ <삭제. 2008. 3. 1>

⑤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2.03. 신설)

제5조(우등생 제한) 18학점 미달 신청자는 우등생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장 교과과정

제6조(교양과목) 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과목은 대학 교양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목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2008.3.1.부분 삭제, 수정) (2017.5.1. 개정) (2018.6.22 개정)

② 교양필수선택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각 핵심역량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8. 6. 22 개정)

제7조(학부별 최저이수학점 및 이수 구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최저 취득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2008.3.1. 수정) (2013.4.22. 수정) (2017.5.1. 수정) (2017.12.15. 개정) (2018.12.18. 개정) (2019.2.8. 개정) (2019.12.18. 개정) (2020.12.16. 개정) (2021.2.4. 개정) (2023.2.7. 개정)

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2011이전 입학생	2012이후 입학생	
사 회 복 지 학 부	교양	교양필수	16	16	
		교양필수선택	8	8	
		사회봉사	P	P	I - IV
		미사	P	P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5	15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30	34	
		전공선택	12	12	
	복지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6	36	
	복지행정학전공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23	19	
		계	140	140	

②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단일심화전공인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2018 입학생	2019이후 입학생	
사 회 복 지 · 상 담 심 리 학 부	교양	교양필수	16	19	
		교양필수선택	8	8	
		사회봉사	P	P	I - IV
		미사	P	P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5	12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66	
	상담심리학전공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35	35	
		계	140	140	

<복수전공인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2018 입학생	2019이후 입학생	
사회복지· 상담심리학부	교양	교양필수	16	19	
		교양필수선택	8	8	
		사회봉사	P	P	I-IV
		미사	P	P	I-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5	12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33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33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35	35	
		계	140	140	

※ 전공기초과목은 해당 전공 및 기타과목에 포함됨.

구분	과정	과목	학점	비고
간호학 과	교양	교양필수	21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IV
		미사	P	I-IV
	전공	전공기초	21	
		전공필수	82	
		전공선택	8	
	계	140		

③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사회복지학 과	교양	교양필수	19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IV
		미사	P	I-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35	
	계	140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상담심리학 과	교양	교양필수	19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IV
		미사	P	I-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35	

	계	140	
--	---	-----	--

<복수전공일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사회복지 학과 / 상담심리 학과	교양	교양필수	19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 - IV
		미 사	P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주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복수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35	
계			140	

※ 전공기초과목은 해당 학과 및 기타과목에 포함됨.

④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간 호 학 과	교 양	교양필수	20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 - II
		미 사	P	I - IV
	전 공	전공기초	14	
		전공필수	80	
		전공선택	8	
계			130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사 회 복 지 학 과	교양	교양필수	18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 - II
		미 사	P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26	
계			130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상 담 심 리 학 과	교양	교양필수	18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 - II
		미 사	P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26	
계			130	

<복수전공일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사 회 복 지 학 과 / 상 담 심 리	교양	교양필수	18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 - II
		미 사	P	I - IV

학과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주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복수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26	
	계		130	

⑤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단일심화전공인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사회복지 · 상담심리 학부	교양	교양필수	18	
		교양선택	8	
		사회봉사	2	I - II
		미 사	4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20	
계		130		

<복수전공인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사회복지 · 상담심리 학부	교양	교양필수	18	
		교양선택	8	
		사회봉사	2	I - II
		미 사	4	I - 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2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융합전공	20		
계		130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간 호 학 과	교 양	교양필수	20	
		교양선택	8	
		사회봉사	2	I - II
		미 사	4	I - IV
	전 공	전공기초	14	
		전공필수	80	
		전공선택	8	
계		136		

제5장 수강과목 확인·변경 및 철회

제8조(확인 및 변경) ① 학생은 수강과목확인 및 변경 기간에 수강과목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9.4.24. 개정) (2022.6.21. 개정)

제9조(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수강과목 철회원을 제출하여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다. (2019.2.8. 직제개정)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5학점(졸업 학기에는 제한 없음)이 되어야 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에는 “W” (Withdraw)로 기재한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30조 제2항에 의한 학점초과신청이나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10조(시험)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공부와 중간성적 및 학기말 시험으로 평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서 예외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실습학점은 실습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무적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성적(학점)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시험에서의 급제는 “D” 이상을 말하고, 그 미만의 평가는 낙제로 한다.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이면 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그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록 학업성적이 급제 이상의 평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낙제로 처리한다. 다만 최종학기 중 취업으로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학부(과)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6.12.14. 단서조항삽입) (2020.4.21. 개정) (2022.6.21. 개정)

제11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한다. (2013.4.22. 수정) (2022.6.21. 개정)

등급	비율
A	30% 이하
A+B	70% 이하
C 이하	30% 이상

② 매 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12조(시험 불응)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 학기 말) 중 그 한 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를 인정받는다. (시험불응원 양식은 교무입학처에 비치) (2019.2.8. 직제개정)

② 시험불응신고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본 대학교 지정병원)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 시험(중간 또는 학기 말)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 시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공결승인) 학생이 다음 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 전 5일 이내에,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는 학적과로 그 사유를 신고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2008.3.1. 신설) (2016.12.14. 자구수정)

1.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자

2. 교육실습, 학부(과) 학술여행, 야외실습참가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2022.6.21. 개정)
3. 징병검사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
4. 학교공식 업무로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 분	기간
본인 결혼	5일
부모사망	5일
조부모, 자녀, 형제사망	3일

제13조(성적제출)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6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 ②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로 처리한다.
- ③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에 결석 수란의 결석 수가 강의실시 시간의 1/4 이상일 때는 “출석 의무”에 의거 성적이 “F”로 처리된다.
- ④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이하 여백 아래 추가되는 학생들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성적 확인) 제출된 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전산 처리된 결과로 담당 교수는 교수 보관용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2.6.21. 개정)

제15조(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 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이수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담당 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 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16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은 이미 이수한 과목과 교과목명, 교과 번호, 학점 및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단, 폐지된 교과목의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12.14. 단서조항삽입)

- ②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이전에 취득했던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 인정된 학점은 성적표에 “R” (Repeated Course) 표시를 하며, 총 성적 평점 평균에 계산한다. (2016.12.14. 자구수정)
- ③ C+ 학점 이하인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한 과목을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 이하로 제한한다. (2015.01.23. 자구수정)
- ④ 계절학기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에 수강한 학점도 일반학기에 재수강이 가능하다.
- ⑤ 재수강은 학기당 6학점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2학점까지만 가능하다. 단, 과목낙제(F)로 인한 재수강은 예외로 한다. (2016.02.03. 신설)

제17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일반 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2013.4.22. 항목추가)

제18조(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 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하고 당해 교과목 모두 “W”로 처리한다.

제19조(계절제 수업 성적처리) ①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거나 환산 총점 및 평점 평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휴학자도 계절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휴학자의 성적처리는 재학생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휴학자가 계절제 수업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제20조(평점 평균의 계산) ① 학칙 제38조에 의한 성적 평점 평균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에 셋째 자리를 절삭한다. (그러나 수강과목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함)

② 성적의 평점 평균의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 합계 2. 성적취득 교과목 수

제21조(학적부 정리)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우등생, 최우등생 및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특별시험

제22조 (특별시험) ① 1학년에 한하여 다음 과목 중 희망에 따라 공인된 영어 능력 평가원에서 인증한 점수로 평가하여, 해당 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 어 I . II

생활영어 I . II

위의 방법으로 교양필수과목을 면제하여 여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2008.3.1. 수정)

②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는 “P”로 학적부에 표시한다. (평점 평균에 영향이 없음) (2008.3.1. 수정)

③ 특별시험 응시희망자는 학기 초 소정 기간에 응시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3.1.부서 변경)

제8장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융합전공(2021.2.4. 개정)

제23조(복수전공) 복수전공은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식의 편협함을 지양하여 넓은 학문적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제24조(범위) 본 대학교는 복수전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 편입생, 만학도(입학연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을 신청한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05.11.22. 단서조항추가) (2017.12.15. 자구수정) (2019.4.24. 개정) (2022.6.21. 개정)(2023.11.14. 개정)

제25조(신청) 삭제

제26조(학점 이수) 복수전공자는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 전공과목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학과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동 과목이 학부(과) 공통 과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4.21. 개정) (2022.6.21. 개정)

제27조(졸업) 복수전공자는 졸업증서에 2개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28조(부전공) 부전공은 학문이 점차 상호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기 전공 이외 분야에 대한 학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전공과목을 일정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

제29조(신청자격)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한 성적의 평점 평균이 2.50 이상인 자로서 4학년 1학기 학년 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 신청서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6.21. 개정)

제30조(학점 이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부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과목이 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되는 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계융합 전공) ① 연계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별도의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021.2.4. 개정) (2022.6.21. 개정)

② 연계융합 전공은 학부(과)(전공) 또는 학생설계로 운영할 수 있다. (2021.2.4. 개정) (2022.6.21. 개정)

제31조1(학.석사연계과정) (2021.6.22. 조 신설)

① 학칙 제34조1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학사과정 4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지원 직전 2개 학기 누계 성적 평점 평균이 3.3 이상인 자
2. 대학원 지원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까지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32조(신청자격) 연계융합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한 성적의 평점 평균이 2.50 이상인 자로서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융합 전공 이수 신청서를 학과장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2019.4.24. 개정) (2021.2.4. 개정)

제33조(학점 이수) 연계융합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연계융합 전공 교과 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1.2.4. 개정)

제33조의2(지침) 연계융합 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2021.2.4. 개정)

제9장 선택전공

제34조 <삭제. 2019.4.24.>

제35조 <삭제. 2019.4.24.>

제10장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제36조(적용대상)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교류 기간) 교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한다.

제38조(등록) 학생은 교류 기간 중 매 학기 등록금을 본 대학교에 납입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수강과목) 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과목은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학연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학점교류 신청) ① 학점교류 신청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과 협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한다. (2019.4.24. 개정) (2022.6.21. 개정)

③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교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무과에 제출한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3.2.7. 개정)

제41조(교류학점 및 성적표기) ① 국내 교류일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소속 학부(과)의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6.21. 개정)

② 국제교류 학생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생략한다.

③ 교류 학생의 성적처리는 타 대학 이수 성적 처리 시까지 성적통지를 유보한다.

④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표에 「타 대학 이수」 표기를 한다.

제42조(학점인정)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목명과 학점은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국내 교류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총 교류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제교류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총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학 과정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1장 졸업의 요건

제43조(등록 학기 및 총 취득학점)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1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8.3.1. 학점수정) (2022.2.8. 개정)

제44조(분야별 취득학점)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과목 이수학점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미사, 사회봉사, 독서인증제) ① 미사는 4개 학기(학칙 제39조 ②의 학생은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2.16. 개정) (2023.2.7. 개정)

② 사회봉사는 2개 학기(학칙 제39조 ②의 학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2.16. 개정) (2023.2.7. 개정)

③ 독서인증제의 운용과 시행절차는 따로 정한다. (2020.12.16. 개정) (2023.2.7. 개정)

제12장 조기졸업

제46조(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학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 학부(과)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6.21. 개정)(2023.11.14. 개정)

제47조(신청 및 졸업시험) ①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초 또는 4학년 1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 졸업을 할 수 없다. (2008.3.1.부서 변경)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졸업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2022.6.21. 개정)

제48조(평점 평균)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재학 기간의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학칙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전적 대학을 포함하여 10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11.14. 개정)

제13장 졸업시험(2022.6.21. 개정)

제49조(적용 범위) 본 대학교 학생은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소정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① <삭제. 2022.6.21.>

② <삭제. 2022.6.21.>

③ <삭제. 2022.6.21.>

④ <삭제. 2022.6.21.>

⑤ <삭제. 2022.6.21.>

⑥ 졸업시험의 세부계획은 학부(과) 단위로 정하여 시행한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2022.6.21. 개정)

제14장 계절학기수업

제50조(시기) 계절학기 수업은 총장이 필요에 따라 방학 중에 개설한다.

제51조(취득학점) 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의 범위 내로 한다.

제52조(성적처리)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고, 장학생 선발 및 학사경고의 성적 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장 재입학

제53조(재입학) ① 자진 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학 사유와 재학 시의 학업성적과 품행을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2019.4.24. 개정)

② 학칙 제25조 제5호, 제7호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13.4.22.항목 삭제)

③ 재입학은 학기 초 등록 기간에 전 재적 기간을 통해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한다.

제16장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54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익년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입학정원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 ③ 일반편입학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또는 재적했던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매 학년 초(또는 학기 초) 해당 학년의 학부(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22.6.21. 개정)(2024.1.25. 개정)
- ④ 외국인, 교포, 외교관 자녀 등은 특례 신입학자의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2·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전적교에서 취득한 과목 중 본교 교육과정의 교양필수 및 전공,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한다.
-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본교에서 6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08.3.1. 수정) (2022.2.8. 개정)
- ⑦ <삭제. 2019.2.8>
- ⑧ 편입학자에게는 전과에 관한 학칙 제19조, 조기 졸업에 관한 학칙 제3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9.4.24. 개정)
- ⑨ 기타 제반 사항은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등록금 대체 및 반환

- 제55조(일반휴학) ① 의병 또는 의가사 등 상당한 이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의 휴학 원서에 진단서(본 대학교 지정병원 발행)를 첨부하고, 의가사 등일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매 학기 개시일 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미제출자는 제적이 된다. (2011.7.1. 자구수정) (2019.2.8. 직제개편)
- ②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10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 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말 시험 이전까지 휴학 원서에 이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 ③ 신입생은 의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6조(입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① 학기 도중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대 일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를 첨부하여 입대 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3.4.22. 항목 추가)
- ②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1년이 초과되면 복학 불가함)
 -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4.22. 항 신설)
 - ④ 육아 휴학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 휴학에 한하여 남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2013.4.22. 항 신설) (2019.2.8. 개정)

⑤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4학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4.22. 향 신설)

제57조(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 원서를 작성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1.7.1. 자구수정) (2019.2.8. 직제개편)

② 전역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으로 휴학하여 복학하는 학생은 진단서(본 대학교 지정병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제59조(제적)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된다.

①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1개월 이상 계속 없이 결석한 자

③ 소정 기한 내(휴학 기간 만료자 포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타교에 입학한 자

⑤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⑥ 학칙 제40조에 해당되는 자

⑦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

제60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등록을 마친 후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을 신청한 학생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대체한다. (2013.4.22. 항목추가)

② 일반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반환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61조(학적부 정정) ① 학적부와 호적부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야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입학처에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 자구수정) (2019.2.8. 직제개편)

② 정정 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022.6.21. 개정)

1. 개명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변경 사유 포함) 첨부)

2. 생년월일 변경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변경 사유 포함) 첨부)

3. <삭제. 2022.6.21.>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초본 첨부)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11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학사내규 제6조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개정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7조 ② 간호학과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④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4조(편입학)는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는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③ 제24조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